

# 평창군 읍·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(신고, 허가)를 법체계에 맞도록 수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16조 및 제17조 수정
  - 시설물의 사용 및 수익처분은 신고사항이 아닌 허가사항에 해당하므로 복지회관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용어 개정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## 평창군 읍·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읍·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6조의 제목“(사용신고)”를“(사용허가)”로 하고, 제16조제1항 후단 중 “신고사항”을 “허가사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용신고 수리 하여야”를 “사용 허가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용신고신청”을 “사용허가신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사용허가 시에는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을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5항 중 “사용신고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“(신고의 취소등)”을“(허가의 취소 등)”으로 하고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신고”를 “사용허가”로, “신고”를 “허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용신고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용신고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 후 사용일 전일까지 이를 징수한다.

제20조제3호 중 “사용신고수리”를 “사용허가”로, “신고하여 그 신고수리”를 “신청하여 그 허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2. 사용신고 수리조건이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

3. 4. (생략)

② 제1항제1호,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해 사용신고의 취소, 제한,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지 아니한다.

제19조(사용료 징수) ① 사용료는 사용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.

② (생략)

제20조(사용료의 반환)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사용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신고수리가 취소된 때

2. 사용허가 -----  
-----

3.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사용허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9조(사용료 징수)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 후 사용일 전일까지 이를 징수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사용료의 반환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사용허가 -----  
-----  
-----신청하여 그 허가 -----  
-----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## 4. 작성자

작 성 자	주민생활지원과장 남 동 선
연 락 처	(033)330-2150

# 관계 법령

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